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22일, 이양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8. 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 28.)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4.)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양수의원)

현행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공업지역”이라 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공업지역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개정안은 어항의 배후지역에 있는 상업·공업지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어촌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어촌에 상업·공업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조에 따른 “어촌”의 정의를 변경하고 있는데, 현재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어촌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제도이므로, 법 전체에 적용되는 어촌의 정의를 변경하기보다는 근거조문에서 어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개정안이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개정안에 따른 어촌의 정의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상 어촌의 정의와 달라지게 되어 두게 된 규정으로 보이므로,

소규모어가 직불제도에 관한 제18조의2의 내용을 수정할 경우 부칙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적을 것으로 보여짐.

그 밖에 개정안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기획재정부는 농림분야의 경우 ‘농촌’의 정의에서 동의 상업·공업지역은 제외하여 소규모

모농가·임가 직불제를 운영 중이므로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해양수산부는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과 달리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어항은 상업·공업지역과 공존하므로, 수산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정태)

직불금 지급과 관련해 어촌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불제도이므로, 법 전체에 적용되는 어촌의 정의를 변경하기보다는 해당 근거조문에서 어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조문 내용을 수정가결하였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8. 기타 사항

없음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9.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현재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해 어촌의 범위가 문제되는 것은 제18조의2에 따른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이므로, 법 전체에 적용되는 어촌의 정의를 변경하기보다는 근거조문에서 어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에 맞게 개정안 부칙을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

수정주요내용

- 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지급요건인 어촌의 범위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 나. 개정안이 공익직접지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한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함(안 부칙 제2조 삭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촌에”를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제2조(정의) ----- ----- -----. 1. (개정안과 같음)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u>및 공업지역을</u> <u>제외한 지역</u> <u>다. 어항의 배후</u> <u>에 있으나 가</u> <u>목 및 나목에</u> <u>해당되지 않는</u> <u>지역으로서 해</u> <u>양수산부장관</u> <u>이 정하여 고</u> <u>시하는 지역</u>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3. ~ 6.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u>어촌에</u>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 ----- ----- ----- <u>어촌</u> <u>(어항의 배후에 있</u> <u>으나 어촌에 해당</u> <u>되지 않는 지역으</u> <u>로 해양수산부장관</u> <u>이 정하여 고시하</u> <u>는 지역을 포함한</u> <u>다. 이하 이 조에</u>

법률 제 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촌에”를 “어촌(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 제도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 관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u>어촌에</u> 거주하는 어업 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소규모어 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 다.	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 제도의 시행) ① ----- ----- ----- ----- <u>어촌(어항의 배후에 있</u> <u>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u> <u>역으로</u>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 <u>여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한다.</u> <u>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u> ----- ----- ----- -----.
1. ~ 4. (생략) ②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